

## 강령

거지당은  
재미와 감동을 주는 스토리 정치를 추구하고  
나라 경제를 해결하고  
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거지당 당원은 칭찬을 생활화하고  
진무도로 심신을 수련한다.

# 당헌

2020. 11. 28 제정

##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당의 명칭은 거지당이라 한다.

제2조(조직과 운영) ① 거지당은 중앙당 및 시도당으로 구성된다. 공직선거가 있을 때 당해 선거구에 선거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② 중앙당은 서울에, 시·도당은 특별시, 광역시 및 도, 특별자치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둔다.

## 제2장 당원

제3조(요건) ① 정당법이 정하는 기준에 맞고 당의 이념과 강령에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은 당원이 될 수 있다.

② 당원은 입당원서를 중앙당 또는 시·도당에 제출하여 입당절차를 완료한 자로 한다.

③ 권리당원은 당비를 권리행사 시점에서 1년 중 6개월 이상 납부하고 연 1회 이상 당에서 실시하는 교육 또는 행사 등에 참석한 당원을 말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고위원회의는 권리당원이 아닌 당원에게 권리당원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제4조(당원의 권리와 의무) ① 당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다만, 제2호, 제4호는 권리당원에 한한다.

1. 선거권
2. 피선거권
3. 당의 정책입안과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4. 공직후보자로 추천을 받을 수 있는 권리
5. 당의 조직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6. 당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

- ② 당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갖는다.
  1. 당헌, 당규를 준수하고 당론과 당명에 따른 의무
  2. 당의 기밀을 지킬 의무
  3.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청렴한 생활을 할 의무
  4. 당이 실시하는 교육, 훈련을 받을 의무
  5. 청렴성과 품위를 유지할 의무
  6. 소정의 당비를 납부할 의무
- ③ 당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기타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5조(당비) ① 당원이 당비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권리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 ② 당원은 다른 당원의 당비를 부담할 수 없으며, 다른 당원에게 자신의 당비를 부담하도록 요구해서도 안 된다.
- ③ 당비의 종류, 액수, 납부절차 및 방법, 납부된 당비의 배분 등에 관해 필요한 세부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6조(포상과 징계) ① 당 발전에 공로가 있는 당원에 대하여는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한다.

② 당원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당의 명예를 훼손한 당원에 대하여는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한다.

### 제3장 대의기구

#### 제1절 전당대회

제7조(지위와 구성) ① 전당대회는 당의 최고의결기관이다.

② 전당대회는 다음 각 호의 대의원으로 구성하되, 3,000인 이내로 한다.

1. 당대표
2. 최고위원(원내대표, 정책위원회 의장, 사무총장 포함)
3. 고문, 자문위원, 재정위원
4. 당 소속 국회의원
5. 당 소속 시도지사
6.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7. 상설위원회 위원장

8. 중앙당 및 시·도당 사무처당직자
  9. 당 소속 자치구·시·군의 장
  10. 당 소속 시·도의회 의원
  11. 당 소속 자치구·시·군의회 의원
  12.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한 대의원
  13. 시·도당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당원
- ③ 전당대회 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전당대회 대의원 결원시 선임방법은 당규로 정한다.
- ④ 전당대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세부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8조(권한) ① 전당대회는 다음의 권한을 가진다.

1. 강령의 채택 및 개정
  2. 당헌의 채택 및 개정
  3. 당대표와 최고위원의 선출
  4. 당의 합당과 해산에 관한 사항
  5. 대통령후보자의 선출
  6. 기타 주요 당무에 관한 사항의 의결 및 승인
- ② 전당대회의 소집이 곤란할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권한은 중앙당무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제9조(임원) ① 전당대회에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둔다.

② 전당대회 의장은 전당대회에서 전당대회 대의원 중 호선으로 선출하며 부의장 2인은 대의원 중 의장이 지명하고,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0조(소집) ① 정기전당대회는 2년마다 전당대회의장이 소집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정기 전당대회 개최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임시전당대회는 중앙당무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전당대회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권리당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전당대회 의장이 소집하여야 한다.

③ 전당대회 소집은 전당대회 의장이 전당대회 개최일전 5일까지 이를 공고한다.

④ 전당대회의 의사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1조(의결정족수) 전당대회는 이 당헌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2절 중앙당무위원회

제12조(구성) ① 당무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300인 이내로 구성되는 중앙당무위원회를 둔다.

② 중앙당무위원회 의장 및 부의장은 전당대회 의장·부의장으로 한다.

③ 중앙당무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한다.

1. 당대표
2. 원내대표
3. 최고위원
4. 정책위원회 의장
5. 전당대회 의장·부의장
6. 상임고문
7. 사무총장
8. 의원총회 선임 국회의원
9. 시·도당 위원장
10. 원외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11. 당 소속 시·도의회 의장 및 대표의원
12. 당 소속 자치구·시·군의회 전국 대표의원
13.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한 중앙당무위원

제13조(권한) ① 중앙당무위원회는 다음의 권한을 가진다.

1. 강령·당헌안의 심의 및 작성
  2. 당규의 제·개정 또는 폐지
  3. 임시전당대회의 소집 요구
  4. 당헌·당규의 유권 해석
  5. 전당대회가 위임하는 안건의 처리
  6. 전당대회의 소집이 곤란한 경우 전당대회 권한의 대행
  7. 최고위원 궐위시 최고위원 선출
  8. 기타 주요 당무에 관한 심의·의결
- ② 중앙당무위원회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4조(소집 및 의결정족수) ① 회의는 당대표의 요구, 최고위원회의의 의결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 및 긴급 현안이 발생하였다고 의장이 인정할 때 의장이 소집한다.

② 중앙당무위원회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 제4장 당기구

### 제1절 당대표 및 최고위원

제15조(당대표의 지위와 권한) ① 당대표는 당을 대표하며, 당무를 통할한다.

② 당대표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의 주요 회의 소집 및 주재
2. 사무총장 등 주요 당직자 임면
3. 공천심사위원장 임면
4. 주요 당직 추천 및 임면
3. 당헌, 당규에 따라 확정된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
4. 당무 전반에 관한 집행, 조정 및 감독
5. 당 예산의 편성
6. 최고위원회의에서 위임한 사항의 처리

③ 당대표의 권한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④ 당대표를 보좌하기 위하여 당대표가 임명하는 당대표 비서실장과 특별보좌역을 둘 수 있고, 당대표의 자문 및 보좌기관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6조(당대표의 선출) ① 당대표는 전당대회에서 선출한다.

② 당대표 선거에서는 대의원 유효투표결과를 70%, 여론조사결과를 30% 반영하여 당선자를 결정한다. 다만, 후보자로 등록한 자가 1인이거나 선거기간 중 중도사퇴 등의 사유로 후보자가 1인이 된 경우에는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후보자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전당대회에서 그 후보자를 당대표로 선출할 수 있다.

③ 당대표의 궐위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당대표 선출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의 각호에 따른다.

1. 궐위된 당대표의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원내대표가 그 직을 승계한다. 다만, 원내대표 유고시에는 새로운 원내대표 선출시까지 선출직 최고위원 선거 득표순으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다만, 권한을 대행할 원내대표, 선출직 최고위원이 없는 경우에는 임명직 최고위원 중에서 최다선 의원이 대행하고 최다선 의원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2. 궐위된 당대표의 잔여임기가 6개월 이상일 경우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임시전당대회를 개최하여 제2항에 따라 다시 당대표를 선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⑤ 당대표의 선출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7조(당대표 직무대행) 당 대표가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원내대표, 최고위원 중 최고위원 선거 득표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선출직 최고위원) ① 선출직 최고위원은 전당대회에서 선출한다.

② 선출직 최고위원 선거에서는 대의원 유효투표결과를 70%, 여론조사결과를 30% 반영하여 1위 내지 5위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다만, 후보자로 등록한 자가 5인 이하이거나 선거기간 중 중도사퇴 등의 사유로 후보자가 5인 이하가 된 경우에는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후보자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전당대회에서 그 후보자를 선출직 최고위원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③ 선출직 최고위원 선거의 후보자가 5인 미만일 경우, 잔여정원은 중앙당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대표가 임명한다.

④ 선출직 최고위원이 궐위 시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중앙당무위원회에서 최고위원을 선출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2개월 미만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관련 사항, 최고위원 선출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9조(임기) 당대표와 최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2절 최고위원회의

제20조(최고위원회의의 구성 및 권한) ① 당무 전반에 관한 심의·의결기관으로서 당무를 통할·조정하기 위하여 최고위원회의를 둔다.

② 최고위원회의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당대표
2. 원내대표
3. 선출직 최고위원 5인
4. 당대표가 지명하는 최고위원 4인
5. 정책위원회 의장
6. 사무총장

③ 최고위원회의의 의장은 당대표로 한다.

④ 최고위원회의는 다음의 권한을 가진다.

1. 중앙당무위원회의의 소집 요구
2. 의원총회 소집 요구
3. 공직후보자의 추천 의결
4. 법률안을 포함한 당 주요 정책에 관한 심의, 의결
5. 주요 당무에 관한 심의, 의결
6. 당무전반에 관한 조정, 감독
7. 당 예산과 결산의 심의
8. 기타 당헌, 당규에서 부여된 권한

제21조(최고위원회의의 소집 및 운영) ① 최고위원회의는 주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당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최고위원회의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③ 최고위원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의 경우에는 당대표가 결정권을 가진다.



### 제3절 당무집행기구

제22조(구성) 당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중앙당에 중앙사무처, 시·도당에 시·도당사무처를 둔다.

제23조(당무집행기구) ① 당대표 직속으로 대변인을 둔다.

② 중앙사무처에 당의 전략·조직·홍보·인사·재정을 총괄하는 사무총장과 이를 보좌하는 조직부총장, 홍보부총장을 두고, 세부 업무 범위는 당규로 정한다.

③ 사무총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조직부총장, 홍보부총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중앙사무처에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부서를 둘 수 있다.

제24조(임명) 사무총장, 대변인, 조직부총장, 홍보부총장은 당대표가 임명한다.

제25조(사무처당직자인사위원회) ① 당무집행기구, 원내대책위원회 및 정책위원회 산하 사무처당직자에 대한 인사를 심의하기 위하여 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사무처당직자인사위원회를 둔다.

② 사무처당직자는 사무처당직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무총장의 추천으로 최고위원회에 보고한 후 당대표가 임명한다.

③ 사무처당직자인사위원회의 운영 등 기타 필요한 사항과 부서별 기능, 복무 및 사무처당직자 임면절차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 제4절 윤리위원회

제26조(구성) ① 당의 윤리의식 강화와 기강 유지를 위해 윤리위원회를 둔다.

② 윤리위원회는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임명하는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윤리위원회에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두며, 위원 중에서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④ 윤리위원회는 자체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안의 경우 사안의 조사를 위하여 윤리관을 둘 수 있으며, 윤리관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윤리위원회의의 협의를 거쳐 지명한다.

⑤ 윤리위원회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7조(기능) 윤리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1. 윤리강령, 윤리규칙 등의 심의 및 제·개정
2. 당헌·당규 및 윤리규칙을 위반하거나 기타 비위가 있는 당원에 대한 징계처분 심의·의결
3. 당 발전에 공로가 있는 당원과 각급 당 기구에 대한 표창의 심의·의결
4. 당 발전에 기여한 업적이 현저한 자로서 당원이 아닌 사람과 기관에 대한 감사장 수여의 심의·의결
5. 기타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요하는 인사 사항

### 제5절 상설위원회

제28조(상설위원회) ① 새로운 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당을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상설위원회를 둔다.

1. 국책자문위원회
  2. 중앙위원회
  3. 국가안보위원회
  4. 인권위원회
  5. 재정위원회
  6. 법률자문위원회
  7. 인재영입위원회
  8. 대외협력위원회
  9. 재외동포위원회
  10. 중소기업위원회
  11. 소상공인위원회
  12. 여성위원회
  13. 청년위원회
  14. 실버위원회
  15. 사회적약자지원위원회
  16. 4차산업혁명위원회
  17. 문화개혁위원회
- ② 당대표는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상설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③ 상설위원회의의 기능과 운영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 제6절 특별위원회 등

- 제29조(특별위원회 등) ① 당대표는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특별위원회 등 특별기구를 둘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 기구를 구성할 때에는 그 활동기간을 정해야 한다. 다만, 최고위원회의의 의결로 1회에 한하여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③ 당대표는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당원의 사회봉사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기구를 둘 수 있다.
- ④ 특별기구 설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 제7절 중앙연수원

- 제30조(중앙연수원) ① 당원의 정치역량 함양과 시민정치교육을 위하여 중앙연수원을 둔다.
- ② 중앙연수원에 원장 1인과 부원장 약간인을 두며, 최고위원회의의 협의를 거쳐 당 대표가 임명한다.
- ③ 여성·청년 등의 신진 정치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정치교육과정을 둘 수 있다.
- ④ 중앙연수원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 제8절 정책연구원

- 제31조(정책연구원) ① 정책의 개발·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중앙당에 별도 법인으로 정책연구원을 설치·운영한다.
- ② 정책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 제9절 국회의원 및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연석회의

- 제32조(구성 및 기능) ① 당무 전반에 관한 당 소속 국회의원 및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국회의원 및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연석회의를 둔다.
- ② 국회의원 및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연석회의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 제10절 시·도당

제33조(시·도당대회)의 구성) ① 시·도당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시·도당대회를 두며, 다음 각 호의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1. 시·도당 위원장 및 부위원장
2. 시·도당 운영위원
3. 관할 당 소속 국회의원
4. 당 소속 시·도지사
5.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6. 당 소속 자치구·시·군의 장
7. 시·도당 사무처당직자
8. 중앙위원회 시·도당 주요 임원
9. 당 소속 시·도 및 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
10. 시·도당 운영위원회가 선임하는 당원
11. 당원협의회에서 선임한 당원

② 시·도당대회 대의원 정수 및 선출방식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34조(시·도당대회)의 권한) ① 시·도당대회는 다음의 권한을 가진다.

1. 전당대회대의원의 선출
2. 시·도당 위원장 선출
3. 중앙당에 대한 각종 건의
4. 기타 시·도당의 주요 당무에 관한 사항의 의결 및 승인

② 시·도당대회의 수임기관으로서 시·도당 운영위원회를 두며, 다음 각 호로 구성한다.

1. 시·도당 위원장 및 부위원장
2. 당 소속 국회의원
3. 당 소속 시·도지사
4.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5. 지역대표 전국위원
6. 당 소속 자치구·시·군의 장
7. 시·도당 상설위원회 위원장
8. 시·도당 부장급 이상 사무처당직자
9. 시·도의회 대표의원

## 10. 당 소속 시·도의회 의장 및 부의장

③ 시·도당대회 및 시·도당 운영위원회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35조(시·도당위원장) ① 시·도당에 위원장과 수석부위원장을 포함한 부위원장 약간인을 둔다.

② 위원장은 시·도당대회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정기 전당대회가 개최되는 해에는 정기 전당대회 이전까지 선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당대회의 연기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최고위원회의의 의결로 기한을 정하여 시·도당위원장의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③ 시·도당 부위원장은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 시·도당 창당승인의 취소 사유와 절차는 당규로 정한다.

⑤ 시·도당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36조(당원협의회) ① 시·도당 아래 국회의원선거구별로 지역당원들의 자발적인 지역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당원협의회를 구성한다.

② 당원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지역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회와 운영위원장을 둔다.

③ 당대표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들을 소집하여 당무 전반에 관한 논의를 할 수 있다.

④ 원외당원협의회의 활성화와 위원장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원외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협의회를 둔다.

⑤ 당원협의회의 운영·구성 등에 대한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 제5장 원내기구

### 제1절 의원총회

제37조(구성) 원내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구성되는 의원총회를 둔다.

제38조(국회의원의 의무와 지위) ①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헌법이 부여한 직무와 선서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당의 모든 기구는 의원의 지위와 권한을 최대한 존중하고 보장하여야 한다.

제39조(기능) ① 의원총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1. 원내대표 및 정책위원회 의장의 선출
  2. 국회의장단 및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선출
  3. 국회대책 및 원내전략의 결정
  4. 국가 주요정책 및 주요법안의 심의
  5. 국회제출 법안 및 의안 중 주요쟁점사안의 심의·의결
  6. 당무에 관한 의견 개진 및 보고 청취
  7. 국회의원의 제명에 관한 사항
  8. 기타 당헌 또는 당규가 정하는 사항과 최고위원회의가 회부하는 사항의 처리
- ② 국회의장·부의장 및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선출방법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40조(의장)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의 의장이 되고, 의장이 회의를 주재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회의를 주재한다.

1. 정책위원회 의장
2. 원내수석부대표
3. 원내부대표 중 1인

제41조(소집) ① 의원총회는 월 2회 정기적으로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며, 의원총회의 의결로 달리할 수 있다.

② 의원총회는 원내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최고위원회의의 요청이 있을 때 원내대표가 소집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소집 목적과 구체적인 안건을 명시하여 최소한 48시간 전에 소속 의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의장은 소속 의원들의 요청시 원내상황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설명하여야 한다.

제42조(회의) ① 의원총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내대표 또는 출석의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의원총회의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③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안건을 추가하거나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④ 안건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과 관련분야 의견수렴을 위하여 외부전문가 토론, 패널토론, 청문회 등 다양한 토론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제43조(의결정족수) ① 의원총회의 의결은 거수 혹은 기립을 원칙으로 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직접, 비밀 투표로 의결하며, 이 경우에는 반드시 의원에게 사전에 문서로 통지하되, 야간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재적의원 3분의 1의 요구가 있는 특별 안건의 경우에는 재적의원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당론변경, 헌법개정, 대통령탄핵, 국회의원의 제명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의결사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그 회의체에서 당연 제척된다.

⑤ 당헌상 달리 의결정족수와 관련한 규정이 없는 경우 이 조항을 준용한다.

제44조(양심에 따른 투표의 자유) ① 의원은 헌법과 양심에 따라 국회에서 투표할 자유를 가진다.

② 제43조에 따라 의원총회에서 의결한 당론에 대하여 의원이 국회에서 그와는 반대되는 투표를 했을 경우에 의원총회는 의결로서 그에 대한 소명을 들을 수 있다.

③ 생명, 윤리, 종교와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는 당론을 정하지 아니한다.

## 제2절 원내대표

제45조(지위)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대표로서 국회운영에 관한 책임과 최고 권한을 갖는다.

제46조(선출 및 임기) ①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선출하며, 그 선출방법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② 원내대표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47조(권한) ① 원내대표는 다음의 권한을 가진다.

1. 의원총회 및 원내대책위원회의 주재
2. 소속 국회의원의 상임위원회 등에 대한 배정
3. 원내수석부대표 및 원내부대표의 임명
4. 정책위원회 부의장, 정책조정위원장 및 부위원장, 위원의 임명
5. 기타 국회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처리

② 제1항제2호의 권한행사시에는 정책위원회 의장의 의견을 들어 배정한다.

제48조(원내부대표 등) ① 원내대표를 보좌하기 위하여 원내수석부대표를 포함한 약간인의 원내부대표를 둔다.

② 원내부대표는 원내대표의 추천과 의원총회의 의결을 거쳐 원내대표가 임명한다.

③ 원내대표가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책위원회 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9조(원내대책위원회) ① 국회활동에 관한 당의 주요대책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원내대책위원회를 둔다.

② 원내대책위원회는 원내대표, 정책위원회 의장,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원내수석부대표 및 원내부대표, 정책위원회 부의장, 정책조정위원장으로 구성한다.

③ 원내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은 원내대표가 겸한다.

④ 원내대책위원회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 제3절 정책위원회

제50조(구성) ① 당 정책의 입안, 심의 및 현안대처 기관으로서 정책위원회를 둔다.

② 정책위원회에 정책위원회 의장과 정책위원회 부의장, 정책조정위원장 및 부위원장, 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정책위원회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④ 정책위원회 의장은 최고위원회의 또는 원내대책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필요한 특별기구를 둘 수 있다.

제51조(기능) ① 정책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1. 당 정책의 연구·심의 및 입안
2. 정부정책에 대한 검토 및 대안 제시
3. 법률안, 대통령령안, 예산안, 국민생활 또는 국가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안에 대한 당·정 정책협의 또는 검토 업무
4. 의원입법안의 연구 및 심의
5. 당 정책에 관한 자문사항의 심의
6. 주요 사회단체의 정책현안 수렴 및 정책 연계활동 등 당내·외 여론 수렴을 통한 정책 개발
7.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에 관한 대외홍보



② 정책위원회에서 심의된 제1항제1호 및 제2호는 원내대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정책위원회 의장은 제1항제3호의 결과를 의원총회에서 소속 의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2조(정책위원회 의장 등) ① 정책위원회 의장은 정책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 정책위원회 의장은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1. 정책위원회의 주재
2. 당 정책에 관한 협의·조정
3. 당정협의업무 총괄·조정
4. 정책위원회 부의장 및 정책조정위원장 및 부위원장, 위원의 추천

③ 정책위원회 의장은 의원총회에서 원내대표와 동반출마 당선제로 선출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원내대표 궐위 시 정책위원회 의장은 당연 사퇴한다.

④ 정책위원회 의장은 정책조정위원회간 정책조정을 위하여 약간인의 부의장을 둘 수 있으며, 부의장은 정책위원회 의장의 추천으로 의원총회 의결을 거쳐 원내대표가 임명한다.

⑤ 정책조정위원장은 정책위원회 의장의 추천으로 원내대표가 임명한다.

⑥ 정책위원회 의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책위원회 의장이 지명하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정책위원회 의장의 궐위 시 의원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 제6장 대통령후보자의 선출

제53조(후보자 선출) ① 대통령후보자는 대통령후보자 선출을 위한 대통령 선거인단의 투표결과와 여론조사결과를 종합하여 선출한다.

② 대통령후보자당선자는 대통령 선거인단 유효투표결과 70%, 여론조사결과 30%를 반영하여 산정한 최종집계결과 최다득표자로 한다. 다만, 후보자로 등록한 자가 1인이거나 선거기간 중 중도사퇴 등의 사유로 후보자가 1인이 된 경우에는 대통령후보자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의 결정에 따라 후보자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전당대회에서 그 후보자를 대통령후보자로 지명할 수 있다.

③ 대통령 선거인단 투표는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하며, 여론조사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일정과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 ④ 제2항의 본문에 의한 최다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재적대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전당대회에서 결선투표를 통해 최다득표자중 다수득표자를 후보자로 지명한다.
- ⑤ 제4항의 경우 최다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재투표를 실시하여 다수득표자를 후보자로 지명한다.
- ⑥ 대통령후보자의 선출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54조(대통령 선거인단 구성 등) ① 대통령후보자 선출을 위한 대통령 선거인단은 다음 각 호로 구성한다.

1. 전당대회 대의원 선거인
  2. 전당대회 대의원이 아닌 당원 선거인
- ② 대통령 선거인단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55조(후보자의 자격) ① 대통령후보자로 선출될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고 후보자등록일 현재 당적을 보유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후보경선에 출마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선출직 당직으로부터 대통령선거일 12개월 전에 사퇴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대책위원장 및 위원은 예외로 한다.

제56조(후보자의 선출시기) 대통령후보자의 선출은 대통령 선거일전 120일까지 하여야 한다. 다만, 선출된 대통령후보자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7조(후보자의 지위) 대통령후보자는 선출된 날로부터 대통령선거일까지 선거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당무전반에 관한 모든 권한을 우선하여 가진다.

## 제7장 공직후보자 추천

제58조(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심사위원회) ①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당에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심사위원회(이하 "공천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공천심사위원회는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임명하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최고위원은 지역구 공천심사위원을 겸할 수 없다.

- ③ 공천심사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두며 위원 중에서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 ④ 공천심사위원회의 후보자 추천은 최고위원회의의 의결로 확정하며, 최고위원회는 공직후보자 추천에 대한 재의의결권을 가진다.
- ⑤ 제5항의 최고위원회의의 재의요구에도 불구하고 공천심사위원회가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공직후보자 추천안을 재의결한 경우 최고위원회의는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
- ⑥ 공천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수행한다.
  - 1. 당 소속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에 대한 공모
  - 2. 당 소속 국회의원 후보자에 대한 심사 또는 선정
  - 3. 우선추천지역 선정
- ⑦ 공천심사위원회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 ⑧ 공천심사위원회는 필요시 객관적이고 공정한 후보자 추천을 위하여 평가시스템을 만들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후보자를 압축 또는 추천할 수 있다. 평가시스템의 세부적인 사항은 공천심사위원회와 최고위원회의의 의결로 정한다.
- ⑨ 공천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 1. 당내경선
  - 2. 단수 후보자 추천
  - 3. 우선추천제도를 통한 후보자 추천
- ⑩ 공천심사위원회는 추천안 마련을 위하여 윤리위원회, 인재영입위원회 등 당 기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당 기구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 ⑪ 제7항제1호의 당내경선은 공천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여론조사 경선으로 갈음할 수 있다.
- ⑫ 제7항제2호의 단수후보자 추천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 1. 공천 신청자가 1인인 경우
  - 2. 복수의 후보자 중 1인을 제외한 모든 후보자가 범죄경력 등 윤리기준에 의하여 부적격으로 배제된 경우
  - 3. 복수 신청자 중 1인의 경쟁력이 월등한 경우
- ⑬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59조(국회의원선거 우선추천제도) ① 지역구 국회의원 공천심사위원회는 우선추천지역을 선정하여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② 공천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우선추천지역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역대 공직선거에서 당 소속 후보자가 당선된 적이 없거나 유권자 대비 권리당원 비율이 현저히 낮은 지역
  2. 반복적인 국회의원선거 패배로 당세가 현저히 약화된 지역
  3. 현역 국회의원 및 원외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이 공천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부적격으로 배제된 지역
  4. 공천심사위원회가 여론조사 결과 등을 참작하여 공천 신청자들의 경쟁력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한 지역
- ③ 우선추천지역의 후보자는 사회적 소수자 및 당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적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인재로 한다.
  - ④ 공천심사위원회는 우선추천 대상지역의 선정 및 후보자 추천 사유를 첨부하여 최고위원회에 보고한다.
  - ⑤ 우선추천지역 선정 기준 등 우선추천제도 시행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60조(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심사위원회) ①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당에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심사위원회(이하 "비례대표 공천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비례대표 공천심사위원회는 당대표가 최고위원회회의의 의결을 거쳐 임명하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최고위원은 비례대표 공천심사위원을 겸할 수 없다.

③ 비례대표 공천심사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두며 위원 중에서 당대표가 최고위원회회의의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④ 비례대표 공천심사위원회는 민주적 심사절차를 거쳐 대의원·당원 등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의 민주적 투표절차에 따라 추천할 후보자를 결정한다.

⑤ 비례대표 공천심사위원회의 후보자 추천은 최고위원회회의의 의결로 확정하며, 최고위원회회의는 공직후보자 추천에 대한 재의 요구권을 가진다.

⑥ 제5항의 최고위원회회의의 재의요구에도 불구하고 비례대표 공천심사위원회가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공직후보자 추천안을 재의결한 경우 최고위원회회의는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

⑦ 비례대표 공천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당 소속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에 대한 공모
2. 당 소속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에 대한 심사 또는 선정

⑧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를 결정하기 위한 선거인단의 민주적 투표절차는 당규로 정한다.

⑨ 비례대표 공천심사위원회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61조(지방선거 공직후보자 추천기구) ① 지방선거 후보자 공천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당과 시·도당에 각각 공직후보자심사위원회(이하 “공천위원회”라 한다)와 시·도당에 비례대표 공직후보자심사위원회(이하 “비례대표 공천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중앙당 공천위원회는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임명하는 당내외 인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시·도당 공천위원회(비례대표 공천위원회를 포함)는 시·도당 운영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시·도당위원장의 추천과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당대표가 임명하는 당내외 인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최고위원은 공천심사위원을 겸할 수 없다.

③ 중앙당 공천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두며 위원 중에서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임명하고, 시·도당 공천위원회(비례대표 공천위원회를 포함)에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두며 시·도당 운영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시·도당 위원장의 추천과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당대표가 임명한다.

④ 중앙당 공천위원회가 심사한 사항은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고 시·도당 공천위원회(비례대표 공천위원회를 포함)가 심사한 사항은 시·도당 운영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최고위원회의의 의결로 확정한다. 다만, 각각의 공천위원회가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 최고위원회의는 재의 요구권을 가진다.

⑤ 제4항의 최고위원회의의 재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공천위원회가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공직후보자 추천안을 재의결한 경우 최고위원회의는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

⑥ 공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가진다. 다만, 시·도당 비례대표 공천위원회는 제1호, 제2호의 권한을 갖는다.

1. 당 소속 각종 공직후보자에 대한 공모
2. 당 소속 각종 공직후보자에 대한 심사 또는 선정
3. 우선추천지역 선정

⑦ 지방선거 공직후보자 추천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62조(시·도지사후보자의 추천) ① 시·도지사 후보자는 중앙당 공천위원회의의 심사와 경선 등을 통해 선정하고, 최고위원회의의 의결로 확정되며 당대표가 추천한다. 다만, 경선은 중앙당 공천위원회의의 결정으로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 후보자는 시·도지사 선거인단의 투표와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선출하고, 이 경우 시·도지사 선거인단은 당해 시·도의 권리당원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 후보자의 선출은 중앙당 공천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선출 방식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시·도지사후보자의 선출 및 추천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63조(기타 공직후보자의 추천) ① '자치구·시·군의 장' 후보자는 시·도당 공천위원회의 심사와 경선 등을 통해 선정하고,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고위원회의의 의결로 확정되며 당대표가 추천한다. 다만, 시·도당 공천위원회가 자치구·시·군의 장 후보자를 선정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시·도당 공천위원회의 요청에 의하여 중앙당 공천위원회의 심사와 최고위원회의의 의결로 확정된다.

② 지역구 시·도의회 및 자치구·시·군의회의원후보자는 시·도당 공천위원회의 심사와 경선 등을 통해 선정하고,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고위원회의의 의결로 확정되며 당대표가 추천한다.

③ 비례대표 시·도의회 및 자치구·시·군의회의원후보자는 해당 시·도당 공천위원회(시·도당 비례대표 공천위원회 포함)의 심사와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고위원회의의 의결로 확정되며 당대표가 추천한다. 다만, 비례대표 시·도위원회의원 후보에 여성이 50%이상 포함되도록 하며, 순위의 매 홀수에는 여성을 추천한다.

④ 시·도당 공천위원회는 원칙적으로 후보자의 추천방식 및 후보자 자격심사와 관련하여 관할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과 협의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관할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은 후보자 선정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경선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시·도당 공천위원회는 서류심사를 통해 후보자에 대한 적격여부를 심사하고, 면접 또는 여론조사를 통하여 단수 또는 압축된 후보자를 추천한다.

⑥ 시·도당 공천위원회는 압축된 복수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경선을 통하여 후보자를 추천한다. 다만, 경선은 시·도당 공천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여론조사 경선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⑦ 자치구·시·군의 장, 시·도위원회의원 및 자치구·시·군의회의원 후보자 선출 및 추천 등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64조(지방선거 우선추천지역의 선정 등) ① 각종 공직선거(지역구)에 있어 우선추천지역을 선정할 수 있다.

- ② '우선추천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유로 선정된 지역을 말한다.
1. 여성·청년·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의 추천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한 지역
  2. 공모에 신청한 후보자가 없거나, 여론조사 결과 등을 참작하여 추천 신청자들의 경쟁력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한 지역
  3. 기타 공천심사위원회가 선거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적절하다고 판단한 지역
- ③ 우선추천지역의 선정은 시·도지사 및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의 경우는 중앙당 공천위원회가 하고, 시·도의회 및 자치구·시·군의회의원 선거의 경우는 시·도당 공천위원회가 하되,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통해 확정한다.
- ④ 우선추천지역의 선정과 관련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65조(재·보궐선거에 대한 특례) ① 제6장 「공직후보자 추천」, 제58조(지역구 국회의원후보자의 추천), 제62조(시·도지사후보자의 추천), 제63조(기타 공직후보자의 추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종 재·보궐선거를 위한 공직후보자는 중앙당과 시·도당 공천위원회에서 후보자를 선정하여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당대표가 추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시행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 제8장 재정

제66조(회계연도) 당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제67조(예산결산위원회) ① 당 운영자금 감사를 위하여 예산결산위원회를 둔다.

② 예산결산위원회는 조직부총장, 재정위원장, 중앙당 회계실무자, 공인회계사 등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조직부총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중앙당 회계실무자를 간사로 한다.

③ 예산결산위원회는 회계연도의 매 분기마다 당내 및 당외 각 1회의 회계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회계감사 종료 후 30일 이내에 최고위원회의에 이를 보고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당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④ 예산결산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여 결정한다.

## 제9장 당헌개정

제68조(개정의 발의) 당헌의 개정 발의는 중앙당무위원회의 의결 또는 전당대회 재적 대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한다.

제69조(의결절차) ① 당헌개정안은 당대표가 전당대회 또는 중앙당무위원회 개최일전 3일까지 공고한다.

② 당헌개정은 전당대회 재적대의원 또는 중앙당무위원회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중앙당무위원회가 당헌개정을 의결한 경우에는 다음 전당대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제70조(개정당헌의 공포) 당헌개정이 확정될 때에는 당대표는 지체 없이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 제10장 보칙

제71조(합당과 해산 및 청산) ① 당이 다른 정당과 합당하는 때에는 전당대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

② 당이 해산 기타 사유로 소멸하였을 때에는 당의 재산과 부채는 소멸당시의 중앙당무위원회가 설치한 수임기구가 청산위원회가 되어 이를 청산한다.

③ 합당과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72조(법정부책과 인장의 인계) ① 중앙당과 시·도당의 대표자 변경, 합당에 따른 조직개편이 있을 때에는 중앙당은 사무총장, 시·도당은 시·도당위원장 또는 사무처장이 14일 이내에 법정부책과 정당운영에 관련되는 인장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② 법정부책과 인장의 종류, 인계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73조(선거대책기구의 지위 등) ① 대통령후보자가 확정되면 그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선거대책기구를 구성한다.

② 대통령후보자는 제1항의 선거대책기구의 구성, 운영 및 선거재정 등 선거업무 전반에 관하여 권한을 가진다.

③ 대통령선거대책기구의 장은 대통령선거일까지 당무전반을 통할·조정한다.

④ 선거대책기구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74조(비상대책위원회) ① 당 대표가 궐위되거나 최고위원회의의 기능이 상실되는 등 당에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안정적인 당 운영과 비상상황의 해소를 위하여 비상대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